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17-66호
2017. 9. 8.(금)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차 례

규 칙(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39호)1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17-166호)22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17-167호)23

공 고(2)

- 담배소매인 준수사항 이행 통보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17-695호)24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대화12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공고 제2017-700호) ...26

입법예고(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제2017-699호)28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수범

2017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3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
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
(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
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
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아. 그 밖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
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삭제한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
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 중 “구 소속 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과”를 “구 소속 공무원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은 제외한다)과 청원경찰,”로 한다.

제4조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1
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
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

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7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대여받아서는”을 “대여받아서는”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0조제1항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를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 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 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한다.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구청장이 정하는 단체)등에 기증한다.
3. 그 밖에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에 대하여는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 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구에는”을 “구청장은”으로, “한다”를 “지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상담 및 준수여부의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지1”를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5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7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에 따른 공직자

구분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30만원	20만원

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

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 라.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마.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소명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input type="checkbox"/>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input type="checkbox"/> 회의				
활동 유형	<input type="checkbox"/> 강의, 강연 <input type="checkbox"/>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input type="checkbox"/> 기고 <input type="checkbox"/> 기타()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20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_____ 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 천원)				
신고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4호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input type="checkbox"/> 금전 차용			<input type="checkbox"/>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대여					
대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자		<input type="checkbox"/>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신 고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연 락 처	
	주 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 명			
	직 업 (소속)		연 락 처	
	주 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 칭		
소 재 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 시			
	장 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 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신고자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7호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청구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별지 제9호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방문 [] 전화 [] 기타()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 락 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 및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행동강령 적용대상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함(제3조).
- 공무원의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제15조).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제17조).
-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함(제23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덕암동 72-9	덕암로125번안길 59	2017.9.7.	건축물신축	덕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1,2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의 안쪽길	
중리동 231-10, 231-11	한밭대로 1122	2017.9.7.	건축물신축	대전시를관통하는주요도로로서한밭이라는 대전의옛명칭반영	
대화동 275-11	대화로234번길 1	2017.9.7.	건축물신축	대화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2,3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대동 430-15	아리랑로55번길 195	2017.9.7.	건축물신축	아리랑로의 시작지점에서 부터 약5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민원지적과(☎042-608-5304)로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담배소매인 준수사항 이행 통보 공시송달 공고

담배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를 미매입함으로써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제6호(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로 인한 후속조치를 알려드리고자 담배소매인 준수사항 이행통보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 2017. 9. 8. ~ 2017. 9. 25.(15일간)

□ 공고사항

○ 공고내용

- 담배소매인으로서 영업 지속 의사가 없을 시 2017년 9월 25일까지 대덕구청 경제과로 방문하시어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 위 기간까지 담배소매업 폐업 미신고시,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 절차 진행 예정

※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행정처분 시, 향후 2년 간 소매인 지정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

○ 공고대상

대표자명	상호	소재지 주소	처분 사유
이선*	만남의**	오정동483-6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양태*	대승자동차***	중리동379-5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안동*	안정**	오정동 619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김춘*	피스메이***	법1동 351-1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대표자명	상호	소재지 주소	처분 사유
김정*	늘푸른**	비래동 141-1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오춘*	정수**	송촌동223-9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백숙*	온돌**	오정동490-2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장광*	피스메이***	읍내동75-6외1필지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윤장*	스마일**	중리동205-1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김신*	럭키아울***	중리동362-1,102호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담배 미매입

□ 담배소매인 관련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경제과(☎ 608-6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대화12호선) 실시계획에 따른 열람공고

1. 대화동 235-16번지 일원 대화동 주민센터 ~ 대화교회 구간 미 개설된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이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소로3-대화12호선 도로개설 사업(대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사업)에 대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대덕구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7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다 음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235-1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소로3-대화12호선)
- 2) 사업의 명칭 : 대화동 주민센터 일원 도로개설사업

다. 사업의 규모

구분	도로명	사업내용	위치		비고
			시점	종점	
도로	소로3-대화12호선	도로개설 L=110m, B=6.0m	대화동 40-80	대화동 235-23	일부 개설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7. 고시일 ~ 2017. 12. 31.

바.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사.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열람장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042-608-521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안 제2조).

나. 본 조례에서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약칭(“법”) 사용이 누락됨에 따라 해당 조항에 추가함(안 제3조).

다.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명확히 규정함(안 제7조).

라. 불필요한 준용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10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7년 9월 2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감사실(전화 : 042-608-6072, FAX : 042-608-3811, E-mail : key7920@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구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은영 (전화 : 042-608-607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규정”을 “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을 “의원”으로, “해당 구의회”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후단의 규정”을 “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2제3항”을 “법 제18조의2제3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번”을 “차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을 “의원 및 소속공무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제2조제1항제1호”로, “새로 위

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의 규정에”를 각각 “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의 규정에”를 “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구성) ① (생 략) <u><신 설></u></p> <p>1. (생 략) 2. 2명의 위원은 <u>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u> 1명과 소속공무원 1명</p> <p>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u>호의 규정</u>에 따라 선임한다.</p> <p>1. · 2. (생 략)</p> <p>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u>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u>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u>해당 구의회</u>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p>	<p>제2조 (구성) ① (현행과 같음) <u>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p> <p>1. (현행과 같음) 2. -----<u>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u>-----</p> <p>② ----- -----<u>호</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 -----<u>의원</u>----- ----- -----<u>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u>----- -----.</p>
<p>제3조 (기능) ① (생 략)</p>	<p>제3조 (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2. 법 제8조제12항 <u>후단의 규정</u>에 따른 승인</p>	<p>2. -----<u>후단</u>----- -----</p>
<p>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u>제18조의2제3항</u>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p>	<p>3. ----- ----- <u>법 제18조의2제3항</u>----- -----</p>
<p>4. (생략) ② (생략)</p>	<p>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u>번</u>만 연임할 수 있다. ②<u>대전광역시 대덕구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u>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u>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u> <u>의회</u>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u>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u>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u>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 -----<u>차례</u>----- ---. ② <u>의원 및 소속공무원</u> ----- ----- <u>제1항에도 불구하고</u>----- ----- ----- ----- ③ <u>제2조제1항제1호</u>----- ----- ---- <u>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p>

<p><u>②간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u></p>	
<p>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u>관하여 필요</u>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p>	<p>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①- ----- ----- <u>필요</u> ----- -----.</p>
<p>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p>	<p><삭 제></p>

[관 계 법 령]

□ 「공직자윤리법」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취업제한기관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2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개정 2014.12.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9.]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

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감사실	
연 락 처	김은영 042) 608 - 6072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